

의안번호	2115453
의 퇴 인	서정숙의원
회 답 일	2022. 5. 6.

심리사법안

【비용추계서】

심리사법안(의안번호 2115453) 비용추계서 요약

I. 재정수반요인

재정수반요인	추계 여부	비고
심리사 자격(안 제5조)	×	·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심리사의 전문영역(안 제6조)	○	·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보수교육(안 제14조)	○	· 심리상담사 규모별로 시나리오 추계
심리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2조)	○	·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심리상담사 자격심의위원회(안 제8조)	○	·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II. 비용추계 결과

□ 추가재정소요: 향후 5년 간 총 13.0~41.6억원(연평균 2.6~8.3억원)

- 본 추계 결과는 자격증 발급 및 교육 대상자의 수를 현행 상담 관련 종사자(정신건강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 정신건강전문요원, 한국심리학회 상담 자격자)의 규모를 기준으로 산출한 값으로, 향후 심리상담사 시험 합격자 수를 고려할 경우 변동될 수 있음

[표]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3~2027년

(단위: 백만원)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연평균
심리사의 전문영역(안 제6조)		8.3	8.7	9.3	9.8	10.4	46	9.3
보수교육 (안 제14조)	시나리오1	211	227	244	262	281	1,225	245
	시나리오2	493	530	569	611	656	2,858	572
	시나리오3	704	756	812	872	937	4,083	817
심리상담사 자격심의위원회 (안 제8조)		5.6	5.6	5.6	5.6	5.6	28	5.6
합 계	시나리오1	225	241	259	277	297	1,299	260
	시나리오2	507	544	584	626	672	2,932	586
	시나리오3	718	771	827	888	953	4,157	831

주: 1. 안 제8조의 자격심의위원회의 추가재정소요는 실제 구성, 회의 개최 횟수, 장소 임차료 등 부대경비 발생 여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시나리오 1) 현행 심리 관련 종사자의 30% 규모

3. (시나리오 2) 현행 심리 관련 종사자의 70% 규모

4. (시나리오 3) 현행 심리 관련 종사자의 100% 규모

차 례

I. 비용추계 결과	1
II. 재정수반요인	2
III. 비용추계의 전제	3
IV. 비용추계 상세 내역	6
1. 추계의 대상 및 방법	6
2. 심리사의 전문영역(안 제6조)	8
3. 보수교육(안 제14조)	8
4. 심리상담사 자격심의위원회(안 제8조)	0... 1
5. 추계 결과	0

일러두기

-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I. 비용추계 결과

- 제정안에 따라 심리사에게 자격증을 교부하고, 보수 교육을 실시하며 심리사 자격심의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시나리오 1의 경우 총 13.0억원(연평균 2.6억원), 시나리오 2의 경우 총 29.3억원(연평균 5.9억원), 시나리오 3의 경우 총 41.6억원(연평균 8.3억원)으로 추계됨
- 본 추계 결과는 자격증 발급 및 교육 대상자의 수를 현행 상담 관련 종사자(정신건강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 정신건강전문요원, 한국심리학회 상담 자격자)의 규모를 기준으로 산출한 값으로, 향후 심리상담사 시험 합격자 수를 고려할 경우 변동될 수 있음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3~2027년

(단위: 백만원)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연평균
심리사의 전문영역(안 제6조)		8.3	8.7	9.3	9.8	10.4	46	9.3
보수교육 (안 제14조)	시나리오 1	211	227	244	262	281	1,225	245
	시나리오 2	493	530	569	611	656	2,858	572
	시나리오 3	704	756	812	872	937	4,083	817
심리상담사 자격심의회 (안 제8조)		5.6	5.6	5.6	5.6	5.6	28	5.6
합 계	시나리오 1	225	241	259	277	297	1,299	260
	시나리오 2	507	544	584	626	672	2,932	586
	시나리오 3	718	771	827	888	953	4,157	831

주: 1. 안 제8조의 자격심의회위원회의 추가재정소요는 실제 구성, 회의 개최 횟수, 장소 임차료 등 부대경비 발생 여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시나리오 1) 현행 심리 관련 종사자의 30% 규모
 3. (시나리오 2) 현행 심리 관련 종사자의 70% 규모
 4. (시나리오 3) 현행 심리 관련 종사자의 100% 규모

II. 재정수반요인

□ 심리사 자격(안 제5조)

- 심리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심리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을 받아야 함
 -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심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 등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리학 관련 과목을 이수하여 학사와 석사를 취득하고 2년 이상 3,000시간이상의 실무수련을 마친 자
 -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대학원에서 심리학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하여 외국의 심리사 자격을 가진 자
- 심리학 관련 학문에 대한 정의, 심리사 교육과정 및 심리사 실무수련에 대한 인증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운영 및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 심리사 국가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함

□ 심리사의 전문영역(안 제6조)

- 심리사 중 전문영역을 표기하려는 자는 관련 실무 경력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함
- 제1항에 따른 전문영역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분야를 표기하지 못함
- 전문영역 표기를 위한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영역 표기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단체에 위임할 수 있음

□ 심리사 자격심의위원회(안 제8조)

- 심심리사 자격 취득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심리사 자격심의위원회를 둠
- 심리사 자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칙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 － 교육인증평가소위원회
 - － 실무수련인증평가소위원회

- 자격관리심의소위원회
- 심리사 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보수교육(안 제14조)

- 의료기관, 공공기관, 센터, 기업, 학교 등에서 제3조에 따른 심리사 업무에 종사하는 심리사는 업무능력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기, 대상, 비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 심리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2조)

-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까지에 한정하여 심리사 자격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함
 1.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
 2. 심리사 관련 국가자격이나 민간자격을 취득하고 심리학 관련 학문 분야에서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제5조제1항제1호의 실무수련 기준에 부합하여 자격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자
- 부칙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존 자격의 인정 기준, 학문 분야 등 관련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Ⅲ. 비용추계의 전제

- 안 제6조 및 안 제14조에 따른 심리사 자격증 발급 및 교육 대상자 규모는 부칙 제2조를 고려하여 현행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및 청소년상담사, 정신건강전문요원, 한국심리학회의 상담 관련 최상위 자격자 수로 가정
 - 본 추계는 현행 심리 관련 종사자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및 청소년상담사, 정신건강전문요원, 한국심리학회의 상담관련 최상위 자격자 수를 준용하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5.8%)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부칙 제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한국심리학회의 상담관련 최상위 자격자 이외에도 제정안에 따른 심리상담사 시험 합격자도 자격증 발급 및 교육 대상자가 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향후 심리상담사 시험 합격자의 수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
- 참고로, 최근 5년간(2017~2021년)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및 청소년상담사, 정신건강전문요원, 한국심리학회의 상담 관련 최상위 자격자¹⁾의 규모는 [표 2]와 같음

[표 2] 현행 심리 관련 종사자 현황: 2017~2021년

(단위: 명)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592	2,760	2,920	3,099	3,252
청소년상담사					
1급	88	109	87	179	84
2급	1,042	787	1,593	1,824	1,558
3급	1,594	1,515	1,623	1,460	2,307
소 계	2,724	2,411	3,303	3,463	3,949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592	2,760	2,920	3,099	3,252
정신건강간호사	7,913	8,184	8,484	8,788	9,054
정신건강사회복지사	4,441	4,758	5,043	5,319	5,611
소 계	14,946	15,702	16,447	17,206	17,917
한국심리학회 상담 관련 자격자					
임상심리전문가	1,355	1,470	1,597	1,699	1,819
상담심리사 1급	1,343	1,453	1,553	1,671	1,799
인사조직심리 전문가	28	29	29	29	30
범죄심리사 전문가	79	84	94	103	113
발달심리사 1급	113	115	118	125	129
인지학습심리사 1급	12	32	32	32	33
건강심리전문가	118	121	122	125	126
학교심리사 1급	31	31	71	81	81
중독심리 전문가	224	254	273	279	279
코칭심리사 1급	18	18	22	23	24
소 계	3,321	3,607	3,911	4,167	4,433
합 계	23,583	24,480	26,581	27,935	29,551

자료: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한국심리학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 한국심리학회에서 발급하는 10개 상담 관련 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님

□ (안 제6조) 본 추계에서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자격증 발급대상자의 5%가 실물 자격증을 신청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1인당 5,000원의 발급 비용이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²⁾은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자격증을 신규 발급할 때 온라인 또는 실물 자격증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자격증 발급자의 5%가 실물 자격증을 신청·발급하였음
- 온라인 자격증 발급에는 별도 발급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실물 자격증 발급의 경우 1인당 5,000원의 발급 비용이 발생함³⁾
- 본 추계는 자격증 발급시스템 구축·운영 비용은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

□ (안 제14조) 심리사 교육 대상자 규모는 전술한 심리 관련 종사자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및 청소년상담사, 정신건강전문요원, 한국심리학회 의 상담 관련 최상위 자격자 중 교육 참여 비율을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추계

- 제정안은 심리상담사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심리상담사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규정
- 그러나 현행 상담 관련 종사자 중 심리상담사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의 규모를 현 시점에서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교육 대상 규모를 시나리오(30%, 70%, 100%)로 구성하여 추계
- (교육 단가) 심리사에 대한 보수교육 단가는 유사사례인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단가를 준용하여 추계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1인당 보수교육 비용은 2022년 예산 기준 20,960원임(본인부담 35,000원 별도)
 - 본 추계에서는 보수교육 비용이 유사사례와 동일하게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에 국회예산정책처의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산출
 - 제정안에 따라 심리사를 대상으로 하는 보수교육을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 위탁운영비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지원 규모를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위탁운영비는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

2)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상담사에 대한 자격증 발급 및 보수교육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위탁하고 있음

3) 실물 자격증 발급 시 발급대상자는 우편요금만 자비부담하고 있음

- (안 제8조) 심리사 자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비용은 유사사례인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위원회”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⁴⁾에 따라 자격검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 추계에서는 위원회 구성과 연간 회의 개최 횟수, 회의 참석수당이 유사사례와 동일한 것으로 가정
 - 본 추계에서는 민간위원이 7명 위촉되는 것으로 하고 민간위원에게 회의 참석수당으로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회의를 연 4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함
 - 회의장소 임차료나 지원인력 등 부대경비는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 (안 제5조) 심리사 시험을 유사사례인 ‘청소년상담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격시험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고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응시자가 납부하는 수수료로 충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으로 함

IV. 비용추계 상세 내역

1. 추계의 대상 및 방법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자격증 발급, 교육 실시, 심리사 자격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청소년상담사”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4) 제4조(구성, 임기 등) ① 검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상담원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청소년상담원 자격관리업무 담당본부장
 2.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평가국장
 3.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장
 4. 청소년상담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청소년상담원의 장이 위촉하는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청소년상담원의 장은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교육 대상자 규모는 현행 심리 관련 종사자(정신건강임상심리사 및 청소년 상담사, 정신건강전문요원, 한국심리학회 회원의 상담 관련 최상위 자격자) 규모를 준용하되,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추계
 - (시나리오 1) 현행 심리 관련 종사자의 30% 규모
 - (시나리오 2) 현행 심리 관련 종사자의 70% 규모
 - (시나리오 3) 현행 심리 관련 종사자의 100% 규모

<비용추계 산식>

$$\text{추가재정소요}_t = \text{심리사 자격증 발급}_t^{1)} + \text{보수 교육}_{it}^{2)} + \text{심리사 자격심의위원회 설치·운영}_t^{3)}$$

이 때, t 는 추계연도(2023~2027년)

i 는 심리사 규모(현행 심리 관련 종사자의 30%, 70%, 100%)

1) 심리사 자격증의 발급 $_t$ = 실물 자격증 발급 대상자 수 $_t^{a)}$ × 발급비용 단가 $^{b)}$

a) 발급 대상자 수 $_t$ 는 현행 심리 관련 종사자 수(2021년 기준 총 29,551명)에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5.8%)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이 중 5%가 실물 자격증을 발급받는 것으로 가정

b) 발급비용 단가는 유사사례인 ‘청소년상담사’의 1인당 실물 자격증 발급비 5,000원이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2) 보수 교육 $_{it}$ = 교육 대상자 수 $_{it}^{c)}$ × 교육 단가 $_t^{d)}$

c) 교육 대상자 수 $_t$ 는 현행 심리 관련 종사자 수(2021년 기준 총 29,551명)에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5.8%)을 적용하여 산출

d) 교육 단가 $_t$ = 교육 단가 $_{(t-1)} \times (1 + \alpha_t)$

* 유사사례인 ‘청소년상담사’의 1인당 보수교육비 20,960원(2021년 예산 기준)에 국회예산정책처의 물가상승률 전망치(α)를 적용하여 추계

3) 심리사 자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비용 $_t$ = 민간위원 회의 참석수당 $_t$

$$= \text{위촉직 민간위원 수}_t^{e)} \times \text{지급단가}_t^{f)} \times \text{연 회의개최 수}_t^{g)}$$

e) 위원 수는 7명

f) 지급단가는 여성가족부 유사사례인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위원회’의 지급단가 20만원 적용

g) 연 회의개최 수 $_t$ 는 연 4회로 가정

2. 심리사의 전문영역(안 제6조)

- 심리사 자격증 발급 대상자 수는 현행 심리 관련 종사자(정신건강임상 심리사 및 청소년상담사, 정신건강전문요원, 한국심리학회의 상담 관련 최상위 자격자) 규모 29,551명(2021년 기준)에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5.8%)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이 중 5%가 실물 자격증을 발급받는 것으로 가정

[표 3] 심리사 자격증 발급 대상자 수: 2023~2027년

(단위: 명)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연평균
자격증 발급 대상자 수	1,654	1,750	1,851	1,959	2,073	9,287	1,857

주: 향후 심리사 시험 합격자 수를 고려할 경우 심리사 자격증 발급 대상자 수는 변동될 수 있음

- 제정안에 따라 심리사에게 자격증을 발급할 경우 실물 자격증 발급 비용으로 향후 5년간 총 4,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앞서 산출한 심리사 자격증 발급 대상자 수에 발급비용 단가 5,000원을 곱하여 산출
 - 발급비용 단가는 유사사례인 ‘청소년상담사’의 1인당 실물 자격증 발급비 5,000원이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표 4] 심리사 자격증 발급비용: 2023~2027년

(단위: 백만원)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연평균
자격증 발급비용	8.3	8.7	9.3	9.8	10.4	46	9.3

주: 향후 심리사 시험 합격자 수를 고려할 경우 심리사 자격증 발급 대상자 수는 변동될 수 있음

3. 보수교육(안 제14조)

- 심리사 보수 교육 대상자 수는 현행 심리 관련 종사자 규모 29,551명(2021년 기준)에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5.8%)을 적용하여 산출

[표 5] 심리사 교육 대상자 수: 2023~2027년

(단위: 명)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연평균
시나리오 1	9,924	10,500	11,109	11,753	12,435	55,721	11,144
시나리오 2	23,156	24,499	25,920	27,424	29,015	130,015	26,003
시나리오 3	33,079	34,999	37,029	39,178	41,451	185,736	37,147

주: 1. 향후 심리사 시험 합격자 수를 고려할 경우 심리사 교육 대상자 수는 변동될 수 있음
 2. (시나리오 1) 현행 심리 관련 종사자의 30% 규모
 4. (시나리오 2) 현행 심리 관련 종사자의 70% 규모
 5. (시나리오 3) 현행 심리 관련 종사자의 100% 규모

- 심리사 교육 단가는 유사사례인 ‘청소년상담사’의 1인당 보수교육비 20,960원(2021년 예산 기준)에 국회예산정책처의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추계

[표 6] 심리사 1인당 교육 단가: 2023~2027년

(단위: 원)

	2023	2024	2025	2026	2027
1인당 교육 단가	21,295	21,615	21,939	22,268	22,602

- 제정안에 따라 심리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경우 향후 5년간 총 12.3~40.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앞서 산출한 심리사 교육 대상자 수에 연도별 교육단가를 곱하여 산출

[표 7] 심리사 교육 비용: 2023~2027년

(단위: 백만원)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연평균
시나리오 1	211	227	244	262	281	1,225	245
시나리오 2	493	530	569	611	656	2,858	572
시나리오 3	704	756	812	872	937	4,083	817

주: 1. 향후 심리사 시험 합격자 수를 고려할 경우 심리사 교육 비용은 변동될 수 있음
 2. (시나리오 1) 현행 심리 관련 종사자의 30% 규모
 4. (시나리오 2) 현행 심리 관련 종사자의 70% 규모
 5. (시나리오 3) 현행 심리 관련 종사자의 100% 규모

4. 심리사 자격심의위원회(안 제8조)

- 제정안에 따라 심리사 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경우 위촉직 민간위원의 회의 참석수당 지급으로 향후 5년간 총 2,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위촉직 위원은 7명으로, 회의 참석수당 단가는 20만원으로, 회의 개최 횟수는 연 4회로 가정함

[표 8] 심리사 자격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2023~2027년

(단위: 백만원, 명, 회)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연평균
단가(A)	0.2	0.2	0.2	0.2	0.2	1	0.2
인원 수(B)	7	7	7	7	7	100	7
개최 횟수(C)	4	4	4	4	4	20	4
합 계(A×B×C)	5.6	5.6	5.6	5.6	5.6	28	5.6

주: 자격심의위원회의 실제 구성, 회의 개최 횟수, 장소 임차료 등 부대경비 발생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위원회 설치·운영비는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5. 추계 결과

- 제정안에 따라 심리사에게 자격증을 교부하고, 보수 교육을 실시하며 심리사 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시나리오 1의 경우 총 13.0억원(연평균 2.6억원), 시나리오 2의 경우 총 29.3억원(연평균 5.9억원), 시나리오 3의 경우 총 41.6억원(연평균 8.3억원)으로 추계됨
 - 본 추계 결과는 자격증 발급 및 교육 대상자의 수를 현행 상담 관련 종사자(정신건강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 정신건강전문요원, 한국심리학회 상담 자격자)의 규모를 기준으로 산출한 값으로, 향후 심리상담사 시험 합격자 수를 고려할 경우 변동될 수 있음

[표 9]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3~2027년

(단위: 백만원)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연평균
심리사의 전문영역(안 제6조)		8.3	8.7	9.3	9.8	10.4	46	9.3
보수교육 (안 제14조)	시나리오 1	211	227	244	262	281	1,225	245
	시나리오 2	493	530	569	611	656	2,858	572
	시나리오 3	704	756	812	872	937	4,083	817
심리상담사 자격심의위원회 (안 제8조)		5.6	5.6	5.6	5.6	5.6	28	5.6
합 계	시나리오 1	225	241	259	277	297	1,299	260
	시나리오 2	507	544	584	626	672	2,932	586
	시나리오 3	718	771	827	888	953	4,157	831

- 주: 1. 안 제8조의 자격심의위원회의 추가재정소요는 실제 구성, 회의 개최 횟수, 장소 임차료 등 부대경비 발생 여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시나리오 1) 현행 심리 관련 종사자의 30% 규모
 3. (시나리오 2) 현행 심리 관련 종사자의 70% 규모
 4. (시나리오 3) 현행 심리 관련 종사자의 100% 규모

국회예산정책처	사회비용추계과
과	장 이진우
추계세제분석관	이윤경
연 락 처	02-6788-4742
	yoonklee@nabo.go.kr
